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증개정 조례안

1. 提案理由

- 가.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당초에는 2000. 6. 30까지로 승인되었으나
- 나. 동 기능전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정원의 존속기한이 1과(5급 1명)는 2000. 12. 31까지, 1과(5급 1명)는 2001. 6. 30까지로 각각 연장 승인되었기 이를 반영코자 함.

2. 主要骨子

가. 정원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 - 단서)

- [표1]의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중 1명의 존속기한은 2000. 12. 31까지로 하며, 1명의 존속기한은 2001. 6. 30까지로 함

나. 조례시행일(부칙 제1조)

- 한시기구·정원의 승인 효력이 2000. 7. 1부터 유효하므로 개정된 조례의 적용일을 2000년 7월 1일로 함

3. 檢討意見

'99.8.1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87회 임시회에서는 정부의 제2단계 지방조직의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기능 통·폐합, 민간위탁 등 기능조정을 통해 기존 행정기구의 통·폐합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당초에는 2000. 6. 30까지로 승인되었으나, 동 기능전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정원의 존속기한이 1과(5급 1명)는 2000. 12. 31까지, 1과(5급 1명)는 2001. 6. 30까지로 각각 연장 승인되었기 이를 반영하자는 것과 개정된 조례의 적용일을 2000년 7월 1일로 하자는 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조 제1항에서는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업무의 성질 및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된 만큼, 현재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의 변경을 초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